

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이 義勇消防隊는 제
가 東京都 義勇消防隊 活動한 事項을 익히
알고서 肯定的 評價를 내렸습니 다만 행여
이 聯合會가 앞으로 大統領選舉와 또 앞으
로 계속 있을 여러 가지 選舉에 利用되는
일이 없도록 순수한 消防業務에 대한 政府
機關과 親睦, 이러한 關係에 대해서 정말
熱情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
주시시오 하고 付託 내지 建議 말씀을 드
리고자 합니다. 感謝합니다.

○委員長 鞠應好 또 委員님 무슨 말씀 있
으세요?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네, 그러면 여러 委員님들의 異議가 없으
시고 다 滿場一致로 意見을 같이 해 주시
기 때문에 서울特別市義勇消防隊設置條例改正
條例案에對한修正動議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
니다.

(議事棒 3打)

(參 照)

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
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소방법 제63조 내지 제68조”
를 “제86조 내지 제91조”로 하고 설
치 및 운영”을 “설치, 명칭, 구역,
조직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안 제4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, 제
3항을 삭제한다.

② 대의 표지의 규격과 제식 등 필
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
한다.

안 제6조(조직) 제1항중 “의소대는 대장1명,
부대장1명, 부장, 반장 및 일반대원”
을 “의소대 및 부녀대에는 대장1명,
부대장1명”으로 하고, 제2항과 제3항
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지역대에는 지역대장 1명을 둔다.

② 의소대(부녀대 및 지역대를 포함한
다)의 하부조직, 업무분장 및 정원
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안 제7조 제1항중 “대장은”을 “대장(의소대
및 부녀대를 말한다)은”으로 하며 제
3항을 삭제 하고, 제4항을 제3항으로
한다.

안 제8조 및 제9조를 삭제한다.

안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, 제3항 다음에
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기타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안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, 안 제12조를
제10조로 한다.

안 제13조를 삭제한다.

안 제14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호 내지 제
4호중 “대원이”와 제5호중 “대원의
자격으로서”를 삭제한다.

안 제15조를 제12조로 하고, 다음과 같이
한다.

제12조(대원의 신분증명)

① 대원은 업무수행시 대원의 신분을
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
② 신분증은 의소대장(부녀대장 포함)
의 경우 시장이, 대원은 관할소방서
장이 발급한다.

③ 신분증의 규격, 제식, 발급, 폐용에
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안 제16조를 제13조로 하고, 안 제17조를
제14조로 한다.

안 제18조를 제15조로, 제1항을 “대원(부녀
대 및 지역대를 포함한다)은 소방업
무수행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
한다”로 하고 제2항 다음에 제3항을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복제의 제식 등 필요한 사항에
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안 제19조를 제16조로 하고, 다음과 같이
한다.

제16조(복무감독)소방서장은 당해소방서

의소대원(부녀대를 포함한다)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.

안 제20조를 제17조로 하고,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검열)①소방서장은 의소대의 운영과 업무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년2회 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의소대의 검열시기,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안 제21조를 제18조로, 안 제22조를 제19조로 한다.

안 제23조를 제20조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에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1호봉 보수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60%로 한다.(단, 백원미만은 절사한다.)

안 제24조를 제21조로 하고, 안 제25조를 제22조로 한다.

안 제26조를 제23조로 제1항중 “입원비”를 “입원비등 요양비”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의 요양비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 보수년액의 80%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근속년수의 계산은 최초입용일로부터 기산하되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간주한다.

안 제27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항중 “별표 5”를 “별표 1”로, “별표 5-1”를 “별표 1-1”로 하고 장해보상표중 “봉급년액”을 “보수년액”으로 한다.

안 제28조를 제25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5조(장제보상) 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의 보수월액 3월분을 지급한다. 이 경우 근속년수

의 계산은 제23조와 같다.

안 제29조를 제26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6조(유족보상) 대원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의 보수년액의 3년분을 지급한다. 이 경우 근속년수의 계산은 제23조와 같다.

안 제30조를 제27조로 하고 제1항중 “제25조 내지 제29조”를 “제22조 내지 제26조”로, “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6호 서식에 의하여”를 삭제하고, “재해”를 앞에 “재해보상비”를 삽입하고, “받은날”을 “입은날”로 한다.

안 제31조를 제28조로하고 제1항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한다)행정구역단위의 의소대연합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한다.)”로 하며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연합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안 제32조 내지 제36조를 제29조 내지 제33조로 하고,

안 제34조 중 “관할행정구역내”를 “관할구역내”로 한다.

안 부칙 제5항을 삭제한다.

안 별표1 내지 별표4와 별지 1호 내지 별지 2호 서식 및 별도 1내지 별도 6을 삭제한다.

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消防本部長 以下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感謝합니다.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쳤으므로 散會를 宣布합니다.

우리 內務委員會 常任委員會는 이번 會期中에는 없고 다음 6日 本會議에 參席하실 때 다시 뵙기로 하였습니다. 感謝합니다.

(議事棒 3打)